

독도수호 결의문 채택의 건

의안 번호	1329
----------	------

발의년월일 : 2005. 3. 29.

발 의 자 : 김교환 의원 외 21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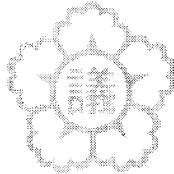
제안이유

- 최근 일본의 시마네현 의회에서는 독도의 영유권을 주장하는 TV광고 및 대대적인 홍보행사 등을 개최한 것을 비롯하여 지난 3월 16일에는 ‘다케시마(독도)의 날’ 제정 조례를 강행처리 하는 등 독도 영유권 주장을 노골화 하고 있고,
- 일본 중학교용 ‘공민’ 교과서에서는 독도를 ‘역사적·국제법적으로 일본 고유의 영토’라고 명시하며 침략, 식민지 지배의 잘못된 역사를 왜곡하고 있음.
- 이에 우리나라에서는 전국민이 일본 정부 당국과 시네마현 의회의 어리석은 망동을 규탄하고 있는바, 우리의회에서도 다케시마 제정 조례를 즉각 폐기할 것과 일본의 시대착오적인 만행을 강력히 규탄하고 우리의 땅 독도를 수호하는 결연한 의지를 천명하는 결의문을 채택하고자 함.

□ 주요골자

- 시마네현 의회의 ‘다케시마의 날’ 제정 조례안을 즉각 폐기할 것.
- 독도와 관련한 어불성설의 억지 주장을 즉시 철회할 것.
- 일본정부당국과 시마네현 의회는 독도관련 만행에 대해 대내·외적으로 공개 사과할 것.
- 독도에 관한 망언 망동에 대해 정부의 단호한 입장과 행동을 취하고 재발방지를 위한 특단의 대책을 강구할 것.

독도수호결의문



안산시의회

독도 수호 결의문

안산시의회 의원일동은 최근 일본 시마네현 의회가 역사적 지리적 국제법적으로도 명백한 우리 영토인 독도를 두고 2월 22일을 이른바 ‘다케시마의 날’로 제정하고 TV 광고와 함께 대대적인 홍보행사를 벌이고 있는 등 독도 영유권에 대한 억지주장을 펼치고 있는데 대하여 분노와 개탄을 금할 수 없다.

아울러 지난 3월 16일 시마네현 의회에서 망국적인 ‘다케시마의 날’ 조례가 통과한 것은 대한민국의 영토주권을 침탈한 군국주의적 행태로 시마네현 의회는 의결된 조례안을 즉각 철회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이와관련 우리정부는 일본정부와 시마네현 의회의 망동이 재발되지 않도록 정부의 단호한 입장과 행동을 취하고 한일관계를 재정립하는 특단의 대책을 촉구하는 바이다.

시마네현 의회가 다케시마의 날 조례를 제정한 억지 주장은 다케시마는 역사적으로도 국제법상으로도 시마네현 오키군 오키노시마에 속하는 일본의 영토라고 망언하고 대한민국이 50년에 걸쳐 섬을 점거하고 있고 각종 접안시설, 국립공원 지정 검토 등의 실질적 지배를 강화해오고 있다며 다케시마의 영토권 확립을 위해 다케시마 공시 100주년인 금년에 맞추어 ‘다케시마의 날’ 조례를 제정한다는 침략적인 야욕이 여실히 드러나고 있는 황당무계한 내용이다.

독도는 삼국시대 신라의 장군 이사부가 울릉도에 상륙하여 우산국을 부속시킨 이래 줄곧 우리 대한민국의 영토임은 두말할 나위 없이 너무나 당연한 일이다.

특히 우리 고종황제는 이미 1900년 10월 25일에 독도는 조선의 영토라는 사실을 밝히는 대한제국 칙령 제41호를 제정하여 만국에 독도가 조선의 영토임을 밝힌바 있다.

이에 독도가 일본 땅이라는 일본의 주장은 처음부터 잘못된 것이었다. 따라서 일본의 독도 편입의 주장은 어불성설의 억지주장으로 아무런 근거가 없다.

또한 1946년 1월 연합군 최고사령관은 한반도 주변의 제주도, 울릉도, 독도를 일본의 통치권에서 제외한다고 밝혀 독도가 우리땅임이 국제적으로 공인됐으며, 일제 패망후 우리나라는 1952년 ‘인접 해양의 주권에 관한 대통령선언’에서도 독도가 대한민국영토임을 다시 한번 천명한바 있다.

이외에도 독도와 관련한 수많은 역사적 사실과 객관적 자료 등은 독도가 역사적으로나 국제법상으로나 실효적 점유에서 대한민국의 영토임은 너무나도 명백한 사실임을 입증해 주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마네현의회가 자의적으로 ‘다케시마의 날’ 조례를 제정하고 TV광고 및 대대적인 홍보행사 등을 개최하는 것은 일본 군국주의 망령에서 비롯된 침략적 근성을 그대로 보여주는 망동이나 다를 바 없다.

이에 우리 안산시의회는 이번 사태와 관련하여 시마네현 의회의 어리석은 망동을 강력히 규탄하고 일본 정부 당국과 시마네현 의회의 잘못된 망상을 준엄하게 규탄하면서 다음과 같이 결의한다.

1. 독도는 역사적으로나 지리적으로나 국제법상으로나 명백한 대한민국의 영토의 부속도서임을 재천명한다.
2. 일본 정부 당국과 시마네현의회는 ‘다케시마의 날’ 제정 조례안을 즉각 폐기하라.
3. 일본 정부 당국과 시마네현의회는 독도와 관련한 어불성설의 억지 주장을 하루 빨리 철회하라.
4. 일본 정부당국과 시마네현의회는 이에 대해 대내·외적으로 공개 사과하라.
5. 대한민국 정부는 일본의 이같은 망언과 망동에 대한 단호한 입장과 행동을 취하고 재발방지를 위한 특단의 대책을 강구하여 추진하라.
6. 안산시 의회는 독도 수호에 앞장 설 것을 다짐하며, 모든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다.

2005. 3. 31.

안산시의회 의원일동